

2020. 12. 7.

수신 : 의장

제목 : 서초구의회의장(김안숙) 불신임안 발의

위 서초구의회의장 불신임안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임 : 서초구의회의장(김안숙) 불신임안 1부. 끝.

발의자 오세철(인) 외 6명

(발의자·찬성자 서명 불임)

『서초구의회의장(김안숙) 불신임안』

의 안 번 호	343
------------	-----

발의연월일 : 2020. 12. 7.

발 의 자 : 김익태 이현숙
 오세철 전경희
 김성주 고광민
 최원준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의거,
서초구의회의장(김안숙)을 불신임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별첨한 바,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따라
서초구의회의장을 불신임하여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5조

」 서명부

의원명	서명.날인	의원명	서명.날인
김익태	Kim	이현숙	Well.s
오내길	Onael	진경희	(날인)
김성화	Kim	고광민	Song
최찬주	CJ.		

[별첨]

2. 제안이유

□ 추진경과

- 2020.7.7.(화) 김정우 의원 구정질문
 - 제298회 서초구의회(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 코로나 재난대응 재산세 감면 제안
 - 과세표준 3억원(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50% 감면
- 2020.8.6.(목) 정세균 국무총리 재산세 세율인하 검토 보도
 - 시세 5억~6억원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검토 보도(매경)
- 2020.8.12.(수) 구청장협의회 안건제출 (서초구→구청장협의회)
- 2020.8.25.(화) 오세철 의원 대표 발의안 제출 (찬성 5명)
 -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주택공시가격 9억원)이하 재산세 50%인하
- 2020.8.31.(월) 구청장협의회 사전 회의
 -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 24:1 부결
- 2020.9.7.(월) 운영위원회 개최
 - 제299회 임시회 9.21~9.23로 연기 결정 (연기사유 : 코로나 확산)
 - 당초 회의일정 (9.9~9.15)
- 2020.9.14.(월) 운영위원회 개최
 - 제299회 임시회 9.21~9.23 연기 확정
- 2020.9.17.(목) 의장단 회의 개최
 - 구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안으로 제출하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안건 상정 심의하겠다고 약속 (당초 9.21~9.23, 변경 9.23~9.25)
 - 집행부안 제출시 오세철 의원 대표 발의 철회

- 2020.9.18.(금) 장옥준 운영위원장 면담
 -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 유권해석 및 재의요구에 대한 법적 절차 설명
 - 9월 임시회의시 안건 심의토록 결정
- 2020.9.18.(금) 김안숙 의장, 장옥준 운영위원장, 오세철 재정 건설위원장 – 구청장 면담
 - 집행부안 제출시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안건 심의하기로 약속
- 2020.9.21.(월) 의장단 회의 개최
 - 집행부안 제출시 안건 심의 약속
- 2020.9.22.(화) 집행부안 제출 (서초구 → 서초구의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출
 - 오세철 의원 대표 발의 철회
- 2020.9.23.(수) 제299회 임시회 개회
 - 긴급 현안 질문 (김정우 의원)
- 2020.9.24.(목) 지방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김정우, 박지남, 장옥준 의원 발의
- 2020.9.24.(목)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 안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표결결과
 - 전경희 의원이 토론 단계에서 수정안 제안 (김익태 의원 재청) 하여 수정안으로 5:0으로 가결
 - 오세철, 전경희, 김익태, 최종배, 김성주 의원 찬성
 - 장옥준 의원 퇴장, 안종숙 의원 불참

- 2020.9.25.(금) 의장이 본회의 미상정
 - 오세철 의원이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발의
 - 의사일정 변경건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7) 가결
 - 김정우 의원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동의안 발의
 - 보류 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6, 반대 8, 기권 1) 부결
 -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회의 상정
 - 표결 결과 (찬성 8, 반대 1, 기권 6) 가결
- 2020.11.6.(금)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2020추5169) 접수
 - 원고 : 서울특별시장 (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 피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대표자 의장 김안숙)
- 2020.11.18.(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천
 - 오세철 의원 외 7명 (조세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
- 2020.11.23.(월) 의원 간담회 개최
 -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천 관련건 외 토의

□ 불신임 사유

1.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확약 위반행위

-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 (의장의 직무 등)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면에서

〈성립요건으로〉

- 주체면에서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내의 사항에 대한 행위로 정당한 의사에 기한 행위 일 것이며
- 내용면에서
 -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행위로 법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며
- 절차 및 형식면에서
 - 법이 정한 절차 및 형식이 구비되어야 할 것임

〈효력〉

-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불가변력, 불가쟁력), 집행력이 있음
- 의장의 위반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와 관련하여 추진경과에서 보듯이
 - 2020.7.7.(화) 제298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김정우 의원이 구정질문으로 코로나 재난대응 차원에서 과세표준 3억원(주택공시가격 5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하여 50% 감면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구정질문하였고
 - 서초구청장이 법적검토 등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 2020.8.6.(목)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세 5억~6억원 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검토하겠다고 대국민 발표가 있었음(공중파방송, 매경 등)
- 2020.8.25.(화) 오세철 의원(찬성 5명)이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감면하자는 내용으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제출한 바 있음
- 2020.9.7.(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 회의일정이 9.9.(수)~9.15.(화)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9.21.(월)~9.23.(수)로 연기 결정 한 바 있고
- 2020.9.14.(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99회 임시회를 9.21.(월)~9.23.(수)로 연기 확정 함
- 2020.9.17.(목)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구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안으로 제출하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안건 심의(당초 9.21~9.23, 변경 9.23~9.25)하겠다고 약속하고 집행부안 제출시 오세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은 철회하기로 함
- 2020.9.18.(금) 서초구의회 의장실에서 김안숙 의장, 장옥준 운영 위원장,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이 구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집행부안 제출시 임시회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안건을 심의(재정건설 위원회, 본회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음
- 2020.9.21.(월)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안 제출시 안건 심의하기로 약속함
- 2020.9.22.(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오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조례안은 접수와 동시에 즉시 철회함
- 2020.9.24.(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전경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여 수정안으로 재적위원 7명중 찬성 5명(찬성 5명, 퇴장 1명, 불참 1명)으로 가결됨

- 2020.9.25.(금)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미상정함에 따라 오세철 의원이 제299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하여 의사일정 변경건 표결 결과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김정우 의원이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여 표결결과 15명중 8명이 반대하여 부결됨

따라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 상정되어 표결결과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된 바 있음
- 추진경과에서 살펴보듯이 임시회 일정 변경 사유가 집행부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의장단 회의 2회, 구청장포함 집행부 간부 면담시 2회) 한 바 있음에도 의장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확약행위를 위반한 행위로서 서초구의회 동료의원과 구청장을 포함한 구청 간부 공무원을 기만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바 있고 간접적으로 서초구민들께 피해를 입힌 바 있음

2. 직권남용과 관련하여

- 제8대 후반기 의원 개인 사무실 배정과 관련하여
 - 2020.7.3.(금) 본회의장에서 의장에 김안숙의원, 부의장에 최종배 의원이 선출되었고
 - 2020.7.6.(월)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장에 장옥준의원, 행정복지 위원장에 이현숙의원, 재정건설위원장에 오세철의원이 선출되었음
 - 2020.7.6.(월) 의장단이 모두 선출 된 후 의원 개인사무실 배정과 관련하여, 서초구의회 제6대 의회부터 전례적으로 의원 사무실 배정시 우선순위로 선수 우선, 선수가 같을시 나이 우선 고려하여 의원사무실을 배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 김안숙 의장이 이런 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초구의회 최다선

으로 4선의원인 김익태의원을 배제한 채 전관예우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여 제8대 전반기 의장인 안종숙의원을 1순위로 사무실을 지정토록하여 김익태의원께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 바 있었음

- 제7대 서초구의회 의원 사무실 배정시 전반기 의장이었던 최병홍 의원(2선), 부의장이었던 권영중의원(2선)의 우선순위를 선수가 같다하여 연장자이신 권영중의원에게 1순위권을 부여한 바 있음
- 2020.7.6.(월)~7.7.(화) 김안숙의장이 제6대 및 제7대 전·후반기 의장들에게 전화로 자문받은 결과 선수우선, 나이순 등으로 의원 개인사무실을 배정하였다는 답변을 듣고
- 2020.7.8.(수) 서초구의회 최다선이신 김익태의원(4선)에게 1순위로 지정하여 해결되었으나
- 위에서 살펴보듯이 의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전례적으로 내려오던 관습을 무시하고 같은 당 소속인 3선의 안종숙의원에게 사무실 배정 1순위를 부여하여 4선인 김익태의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힌다는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였다 할 수 있음

3.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 의장의 직무태만 및 직무소홀

〈의장 결재 문서 현황〉

계	5일이내 결재	5일초과 10일이내	10일초과 20일이내	20일초과	미결재
186건	107건	23건	27건	10건	19건
100%	57.5%	12.4%	14.5%	5.4%	10.2%

- 2020년 7월 제8대 후반기 문서접수 의장 결재현황을 살펴보면
 - 총 186건을 접수하여 5일이내 결재가 107건(57.8%)이고 5일초과 10일이내 결재가 23건(12.4%), 10일초과 20일이내 결재가 27건(14.5%). 20일초과가 10건(5.4%), 미결재가 19건(10.2%)임

- 서초구의회 의회사무국에서 문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여야 함에도 5일초과후 결재와 2020년 11월 까지 미결재한 것이 총 79건(42.5%)으로 의장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2020.11.25.) 의장 개회사 시
 - 의장은 서초구의회 의원 15명을 대표하는 자리로 중립적인 언행을 하여야 하나,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소회를 말하면서 서초구가 서울시 재의요구에 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취했어야 한다고 서울시 편을 두둔하는 의견을 표현한 바 있어
 - 전경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개회사 중 일부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장은 우리의원 15명을 대표하는 자리인데 의구심을 표하였고, 구세 감면 조례안은 구의원 8명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된 조례안인데 의장이 집행부가 서울시 재의를 수용하지 않은 점과 여유를 갖고 검토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했고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 함
 - 특히 2020추5169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 원고 서울특별시장 (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대표자 의장 김안숙)

문서접수가 2020년 11월 6일인데 피고가 서초구의회로서 서초구 의원 모두에게 이 사실을 즉시 전파하여야 함에도 17일이 경과한 2020년 11월 23일 의원 간담회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건으로 간담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으며 참고로 2020년 11월 18일 사전에 인지한 오세철 의원 외 7명이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추천하였음에도 차일피일 지연하며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음

4. 결론

김안숙 의장은 서초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무를 망각하고 의원들의 의결사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서초구의회가 피고인 소송에서도 변호사 선임 등을 지연시키는 등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해에 따라 편향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의사운영에 있어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9조,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를 위반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불신임을 요구함